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1559

제안년월일 : 2016년 12월 5일
제 안 자 : 기 획 경 제 위 원 장

1. 수정이유

○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 보고의무를 부여함(안 제4조의3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3제2항 중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 정 안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정안	수 정 안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⑥ (생략)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한다.**	<개정안과 같음>
⑧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⑨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⑥ (생략)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한다.**
⑧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⑨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